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고성능 숏크리트를 활용하여 터널의 급속안정화 및 급속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실리카흙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하여 경제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3시간 압축강도 1MPa이상, 28일 압축강도 40MPa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도록 한 숏크리트 공법이다

<범위>

실리카흙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한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25. ~ 2021.01.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엔코텍(박재성) ② 중앙산업(주)(한영환)

나. 전화번호 : ① 02-333-3430 ② 053-963-803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7호

3. 명칭 :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견인튜브와 반전튜브를 분리하여 각각의 튜브에 수지를 함침하여 튜브의 두께와 중량을 줄이고,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와 맨홀과 관입구에 설치하여 튜브손상방지를 위한 견인튜브 유도장치를 통해 견인튜브를 삽입한다. 삽입 완료 후 견인튜브내로 수지가 함침된 반전튜브를 공기압으로 삽입 시 반전기내부에 미리 설치된 열호스를 반전과 동시에 관입구까지 놓이게 한 후 반전삽입 완료 후 열원(증기열)을 공급하여 현장에서 신관을 생성하는 연성라이닝 비굴착 전체 보수 기술이다.

<범위>

도르래를 응용한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에 증기를 분사하는 경화방식을 적용하여 기존하수관을 보수하는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1,200mm이하)

5. 보호기간 : 2013.01.29. ~ 2021.01.2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해양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사고 대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양경찰법」(법률 제16515호, 2020.2.21. 공포·시행)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 해양경찰 고유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